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3 - 132호

2013년도 업종공통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

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·제품 및 공정혁신을 지원하는 『2013년도 업종공통 기술개발사업』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13년 5월 21일
중 소 기 업 청 장

1. 사업개요

□ **사업개요**

○ **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·제품·공정** 등을 **협동조합이 발굴하여 기술개발**하고 **동종 및 유사업종 중소기업에 보급·확산**함으로써, 중소기업의 기술·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을 지원하여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

□ **지원규모** : 42억원

○ 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(총 사업비의 75% 이내)

□ **지원내용**

○ 동종 및 유사 업종의 중소기업에 적용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큰 공통 기술·제품·공정혁신 과제 지원

2. 신청자격

□ **신청자격**

○ **주관기관 :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**
(단, 기술개발지원제외 업종의 협동조합은 제외)

* 단, 결과물 적용 및 보급 확산을 위해 **참여기업은 반드시 참여**

○ **참여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**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**주관기관의 회원사**

<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>

업종분류	코드번호(세세분류)	업 종	업종분류	코드번호(세세분류)	업 종
숙박 및 음식점업	55112	여관업	오락업 및 문화업	91121	골프장운영업
	55113	휴양콘도 운영업		91223	노래연습장운영업
	55119	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		91291	무도장운영업
	55909	그외 기타 숙박업		91249	기타갬블링 및 베팅업
	56111	한식 음식점업			
	56112	중식 음식점업			
	56113	일식 음식점업	공공,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	96111	이용업
	56114	서양식 음식점업		96112	두발미용업
	56120	기관구내식당업		96113	피부미용업
	56119	기타 외국식 음식점업		96119	기타미용업
	56131	출장 음식 서비스업		96121	욕탕업
	56192	피자, 햄버거,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		96122	마사지업
				96129	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
	56193	치킨 전문점		96912	가정용세탁업
	56194	분식 및 김밥 전문점		96913	세탁물공급업
	56132	이동 음식업		96921	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
	56199	그외 기타 음식점업		96922	화장, 묘지분양 및 관리업
	56211	일반유흥 주점업		96991	예식장업
	56212	무도유흥 주점업		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
	56219	기타 주점업		96993	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
	56191	제과점업		96999	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
	56220	비알콜 음료점업			
부동산업 및 임대업	68111	주거용건물임대업			
	68112	비주거용건물임대업			
	68119	기타부동산임대업			
	68121	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			
	68122	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			
	68129	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			
	68221	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			

□ 선정절차

○ (서면 및 대면평가)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검토(전문기관)

○ (현장평가) 관련 증빙서류 현장 평가(관리기관)

* 현장확인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

구 분		확인 근거 (증빙서류)
조합	조합 현황	▪ 법인 등기부등본, 조합원 명부 등
	기술개발관련 현황 부채비율, 자본잠식 등	▪ 기술개발 관련 현황(기술개발 실적, 기술개발 보유 인력 등) ▪ 과제참여 관련 조합 이사회(또는 조합 내 기술위원회) 의결서, 조합원 참여 수요조사 등 ▪ 네트워크 구축 정보(협약서, 공동기술개발 실적, 대학·연구소와 기술협력 관련 증빙서류 등) ▪ 재무재표 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)
참여기업	최근년도 매출액, 부채비율, 자본잠식,R&D 투자비율 등	▪ 재무제표 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) ▪ 기술개발 관련 현황(기술개발 실적, 기술개발 보유 인력 등)

* 재무재표 : 최근 년도 기준

3. 지원금액

□ **정부지원금** : 총사업비의 75% 이내

□ **민간부담금** : 총사업비의 25%이상 부담
(민간부담금의 20%이상은 현금 부담)

과제구분	개발기간	지원금액	정부출연금 비중	비고
일반과제	1년 이내	2억원 한도	총사업비의 75% 이내	자유응모

* 기술개발 결과물은 주관기관인 협동조합에 귀속되며,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8조 제3항에 근거하여 기술료 징수 면제

4. 신청기간 및 방법

○ **신청기간** : 2013년 5월 22일(수) ~ 7월 11일(목), 18:00까지

※ 마감일 18: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
※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**전산 및 전화 응대는 마감일 18:00**까지
※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, 가급적 마감일 1~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

○ **신청방법** : 온라인 (인터넷)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

☞ http://www.smtech.go.kr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과제관리 → 과제신청 → 지원사업(협동조합공통기술개발사업)선택 후,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

○ **온라인 신청절차**

신청절차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수행내용	회원가입	온라인 직접입력	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	접수 확인 및 완료
사업계획서		[별지 제1-①] Part Ⅰ	[별지 제1-①] Part Ⅱ	

<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>

① 1단계 : 회원가입
-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,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

② 2단계 : 온라인 직접입력
- **[별지 제1-①호]** 사업계획서 Part Ⅰ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, 신청접수 시 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을 통해 직접 입력

③ 3단계 :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
- **[별지 제1-①호]** 사업계획서 Part Ⅱ의 내용을 작성·업로드하는 것으로, 한글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 업로드
- **[별지 제1-② ~ ⑧호]**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

④ 4단계 : 접수 확인 및 완료
-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, 신청·접수 완료 확인

※ 접수 완료 후 수정시 필히 접수확인 및 완료 절차 마감 필요

○ 신청시 구비서류

연번	서식 명		제출방법	해당여부
①	업종공통 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	Part Ⅰ	*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	필 수
		Part Ⅱ	* 인터넷에서 해당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, 문서파일 업로드	
②	중소기업 경영현황표			
③	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			
④	연구시설·장비 구입 계획서			
⑤	연구시설·장비 도입 계획서			
⑥	신용상태 조회 동의서			
⑦	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			해당시
⑧	위탁연구기관(참여기업) 참여의사 확인서			
⑨	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			

5.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

※ 평가, 선정,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□ 서면·대면 평가 (7월)

○ 산·학·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,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에 대해 서면으로 평가를 실시

○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, 사업계획 타당성,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대면평가한 후,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평가 추천대상과제에 선정

* 주관기관 준비사항 :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 자료

□ 현장평가 (8월)

○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주관기관의 개발능력, 인프라(연구인력, 보유시설),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결과를 심의조정위원회에 제출

* 주관기관 준비사항 : 재무제표, 기술개발 조직 및 연구인력 현황 등(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기관에서 통보)

□ 지원과제 선정 (8월)

○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 중 종합평점 순위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지원금액을 심의·확정

※ 종합평점 = (대면평가 점수 × 0.6 + 현장평가 점수 × 0.4)

□ 협약체결 (9월) 및 정부지원금 지급 (9월)

○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이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및 민간부담금 납부를 완료한 경우 정부지원금(포인트)이 지급

< 2013년 업종공통 기술개발사업 추진절차도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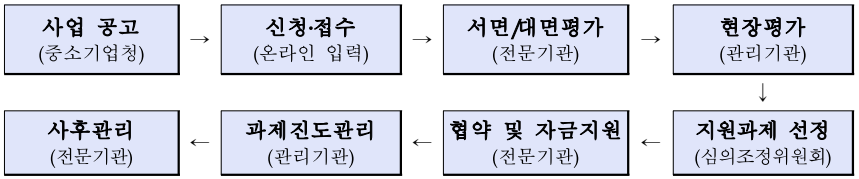

* (전문기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(관리기관) 중소기업중앙회

6. 기술료 납부

○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으로 기술혁신촉진법 제28조, 운영요령 제29조에 의거 기술료 징수 면제

7.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

□ 신청제한

※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,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가능하고,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·지원 제외대상 해당

※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·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

○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참여기업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)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
-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부도, 휴·폐업,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

○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,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, 개발특성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
○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,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,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

○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·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

□ 평가·지원제외

※ 평가·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·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

○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, 개발특성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

○ 주관기관, 참여기업,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① 주관기관이 휴면조합, 해산건의 중인 조합, 이사장(회장) 및 상근이사가 모두 공석인 조합, 세금 체납중인 조합
② 참여기업의 부도, 휴·폐업
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④ 부채비율이 1,000%이상인 경우 (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)
⑤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

※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

* 최근 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

○ 주관기관과 창업 2년 이상의 참여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(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)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

8. 기타 공지사항

□ 주관기관은 본 사업에 1개 과제만 신청 가능

□ 사업신청시 기술개발 과제 발굴에 관해 조합 회원사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발할 기술의 보급·확산 계획을 수립(평가시 반영)

□ 2012년 업종공통기술개발사업(舊협동조합공통기술개발사업)에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수행중인 과제가 종료되어야 신청가능

(다만,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4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)

□ 주관기관이 개발기술의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, 기술료관리규정 제9조에 의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전문기관에 기술료 사용계획과 징수결과를 보고해야 함

* 협동조합은 회원사에 실시권을 허여하고, 기술료를 징수하여 조합 R&D역량 제고에 활용

□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참여기업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)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
□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'2013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'과 '2013년도 업종공통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'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

※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예정

9. 문의 및 확인

□ 문의처

○ **전문기관**

담당기관(담당부서)	전 화	문의사항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중소기업R&D 콜센터)	1661-1357 (내선 2)	온라인 신청 및 시스템, 신청·접수, 사업계획 작성, 과제평가, 유의사항 등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사업담당자)	042-388-0218	

○ **관리기관**

기 관 명(담당부서)	전 화	문의사항
중소기업중앙회 (공동사업팀)	02-2124-3101/4	사업설명회, 사업계획 작성, 현장평가, 유의사항 등

□ 인터넷 확인

○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과제관리시스템 (www.smtech.go.kr)

○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(www.tipa.or.kr)

○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 포탈 (http://johap.kbiz.or.kr)